

##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원칙(지침 제17조 관련)

<원칙 1>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.

<원칙 2> 국민연금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본 원칙, 「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.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책임투자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검토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이행합니다.

<원칙 3> 국민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, 채권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. 다만,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금운용의 여건 및 자산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도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.

<원칙 4>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.

<원칙 5>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기업의 중·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,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주활동 등을 통해 책임투자를 이행합니다.

<원칙 6> 국민연금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시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,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이행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.

<원칙 7>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 이행과정에서 투자대상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공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기금운용 관련 거래기관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정보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합니다.

<원칙 8> 국민연금기금은 책임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 책임투자 관련 국제 기관투자자 협의체 등을 통하여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.

<원칙 9>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책임투자 원칙 및 지침, 책임투자 이행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.